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7회 임시회(2021. 3. 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26

2021. 3. 5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이민석 의원 외 8 인

나. 제 안 일 : 2021. 2. 26.

다. 회 부 일 : 2021. 2. 26.

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라.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2)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

3)「의료법」,「영유아보육법」,「노인복지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1. 2. 24.~ 3. 2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에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○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3조에서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4조는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화재 대피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의 설치를 권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마련되었음.

○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40건으로 사망 3건, 부상 29건, 재산피해 20억6,904만9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음.

<표 1.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할관서별 화재건수>[1)]

(단위 : 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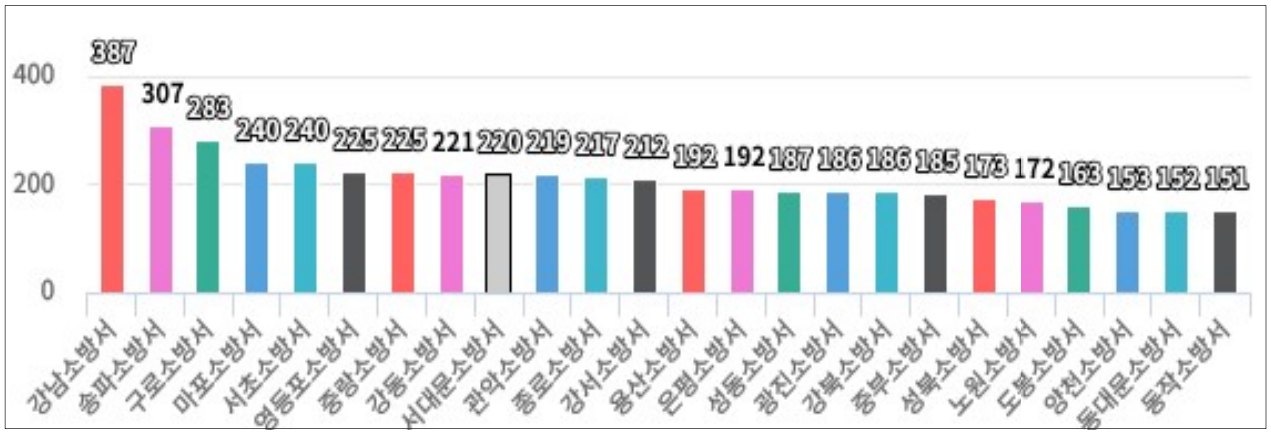

○ 화재발생에 따른 사망사고의 주요원인이 유독가스 흡입인 것을 고려하고 공공기관 및 어린이, 노인,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○ 향후, 집행부에서는 구민 누구나 방연마스크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법의 교육을 포함한 홍보계획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시행해야 할 것임.

<표 2. 안 제3조에 따른 시설 현황>

(단위 : 개소)

구분	합계	공공청사	공공기관	영유아 시설	학교	복지시설	의료기관
마스크 비치 권장시설	1,311	20	28	228	47	248	740

1)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

[관 계 법 령]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. 국공립학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
5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